

2026년 울산광역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

울산광역시는 「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(행정안전부)」에 따라 2026년 울산광역시 마을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1. 18.

울 산 광 역 시 장

1. 공고 개요

- 접수기간 : 2025. 11. 19.(수) 09:00 ~ 11. 28.(금) 18:00
- 모집대상 : 예비, 신규(1회차), 재지정(2회차), 고도화(3회차)
- 지원내용 : 마을기업 사업비 및 자립지원(교육, 컨설팅, 판로지원 등)
- 지원금액 : (예비) 지원없음, (신규) 5천만원, (재지정) 3천만원, (고도화) 2천만원
※ '26년 행안부 예산(안)에 따라 지원 내용 변동 가능
※ 보조금 지원 시, 보조금의 20% 이상 자부담(청년마을기업은 10% 이상)
- 사업기간 : 약정체결일 ~ 2026. 12. 31.
- 신청방법 : 방문 제출(사업장 소재지 구·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)

2. 세부 추진일정

공고	신청접수	현장실사 및 적격검토	1차 심사	2차 심사 및 최종지정	약정 체결
'25. 11. 18.	⇒ '25. 11. 19. ~ 11. 28.	⇒ '25. 12월	⇒ '25. 12월중	⇒ '26. 2월	⇒ '26. 3월
시	소재지 구·군	구·군, 지원기관	시 심사위원회	행정안전부 (신규·재지정·고도화)	구·군 ↔마을기업

3. 신청자격

□ 예비 마을기업

※ 예비 마을기업은 1회차(신규) 마을기업 심사기준에 준하여 평가

- 신청대상 : 마을 또는 단체(5인 이상 참여하는 비(非)법인 공동체) 등도 가능
 - 단,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.
 - ※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구성요건 : 출자자(회원)는 5인 이상으로, 지역주민 비율이 70% 이상(구·군 단위일 경우 80% 이상)이어야 함
 - ※ 회원 중 지역주민이 5명 이상이어야 하며, 출자자가 5명일 경우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
 - ※ 지역주민이란 해당 읍·면·동(또는 구·군)에 거주지 또는 직장이 있는 주민을 의미함
- 지정기간 : 약정 체결일로부터 2년 ※ 1회 연장 가능
 - 지정(연장) 기간 내 마을기업으로 지정(전환)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지정 취소

□ 신규 마을기업(1회차)

- 신청대상 :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주도(주민 5인 이상)하여 설립한 법인
 - * 민법상 법인, 상법상 회사, 협동조합, 영농조합 등
 -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·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
 - 예비 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,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
- 구성요건 : 출자자(회원)는 5인 이상으로, 지역주민 비율이 70% 이상(구·군 단위일 경우 80% 이상)이어야 함
 - ※ 회원 중 지역주민이 5명 이상이어야 하며, 출자자가 5명일 경우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
 - ※ 지역주민이란 해당 읍·면·동(또는 구·군)에 거주지 또는 직장이 있는 주민을 의미함
- 필수교육 :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이 입문교육(7시간) 이수 필요
 - ※ 울산광역시 심사일 기준 교육 이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
 - ※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기초·심화교육(총 10시간)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

□ 재지정·고도화 마을기업(2~3회차)

- 신청대상 : 1회차 또는 2회차 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,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
- 필수교육 : 대표자 포함 회원 5명 이상이 기본교육(4시간) 이수 필요
 - ※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심화교육(2시간)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(대표자 포함 회원 3인 이상)

청년마을기업 지원요건

- **혜 택** : 자부담 경감(20%→10%), 지역주민비율 완화(70%→50%), 심사 가점(최대 3점)
- **지정요건** : 지역주민을 5인 이상 포함하고, 지역주민비율(50% 이상)과 청년회원비율(30%~50% 이상)을 충족하여야 함

<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청년회원>

기초자치단체(구·군) 청년*인구비율**	15% 미만	15% 이상 ~ 20% 이하	20% 초과
청년회원비율	30%	40%	50%

- * 「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」의 정의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
- * 산정 기준 :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말일(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참고)
- 청년마을기업으로 2·3회차 지정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청년마을기업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지역주민비율과 청년회원비율에 대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- 청년마을기업의 경우, 해당 구·군 소재 대학교의 재·휴학생 또는 졸업생(공고일 기준 졸업 후 3년 이내)도 지역주민으로 인정 ※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 등으로 확인
- ※ 일반회원 증가 및 청년회원의 나이 초과 등으로 청년회원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, 일반마을기업으로 전환 또는 지정 취소됨

□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
-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
 -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
 -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
 -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
- ※ 신규·재지정·고도화 마을기업, 재도약, 우수, 모두애(愛)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
-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
4. 심사방법 및 일정

- 울산광역시 심사(대면심사) ▷ 2025. 12월중
 - 지정요건 충족여부, 그간 사업성과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
 - 신청기업별 사업계획 발표(5분) 후 심사위원 질의·답변(10분)
 - 심사위원 평균점수*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 부여(80점 미만은 탈락)
 - * 평균점수 :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
 - 심사위원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·수정 의견 제시 가능
 - ※ 신청기업은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-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및 지정 ▷ 2026. 2월 중
- 결과통지(구·군) ▷ 2026. 2월중

5.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

□ 신청서류

구분	신청 서류		
기본 서류	공통	① 사업신청서(서식1) ② 회원 명단(서식2),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, 자부담 통장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(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	
	추가 (회차별)	1회차	입문교육 이수 확인서
		2회차	전문교육 이수 확인서, 실적보고서(전년도, 서식3), 정산서류(1회차)*, 재무제표(전년도)
		3회차	전문교육 이수 확인서, 실적보고서(전년도, 서식3), 정산서류(2회차)*, 재무제표(전년도)
기타 증빙 서류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(계약기간 명시) ③ 인허가증명서 사본(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: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) ④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,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(법인 회의록, 보조금 관련 서류 등)		

* 2·3회차 마을기업 지정 신청 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, 구군을 통해 보조금 집행 실적 등을 확인·검토(e-나라도움)받아 그 결과를 '적격검토보고서'에 구체적으로 기재

※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의무교육(1회차 입문교육, 2·3회차 전문교육)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, 시 심사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(미제출 시 심사 제외)

□ 접수방법

○ 접수기간 : 2025. 11. 19.(수) 09:00 ~ 11. 28.(금) 18:00

○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구·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

구·군	담당부서	연 락 처
울산광역시 중구	일자리정책과	052-290-4463
울산광역시 남구	소상공인진흥과	052-226-3143
울산광역시 동구	경제정책과	052-209-3525
울산광역시 북구	경제일자리과	052-241-7279
울산광역시 울주군	지역경제과	052-204-1387

○ 접수방법 :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접수

※ 마을기업 신청법인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*의 컨설팅을 받은 후 해당 소재지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에 제출

* (재)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☎ 052-283-7162

붙임 1. 지정요건, 심사기준 및 사업비 편성기준 1부.

2. 신청서류 양식 1부. 끝.